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5년 4월 28일
권 유 자: 성 명: (주)BNK금융지주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전화번호: 02)620 - 3000

BNK

I. 권유자·대리인·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BNK금융지주	-	-	-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성세환	대표이사	기명식 보통주	14,994	0.01	회장	
정민주	부사장	"	-	-	부사장	
이봉철	비상임이사	"	-	-	비상임이사	
김성호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김우석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문재우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김창수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박흥대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김일수	부사장	"	4,303	0.00	부사장	
계			19,297	0.01		

주)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성영	기명식 보통주	4,090	직원	-
박제욱	"	7,976	"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5년 4월 16일 기준일 현재 주주 전체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과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5년 5월 4일, (종료일) - 2015년 5월 13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www.bnkfg.com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BNK금융지주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위임장용지 교부 안내기재 필

※ 위임장용지는 4월28일 이후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전자공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5년 5월 13일 10시30분

(장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부산은행 본점23층 SKY홀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박계욱 (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부 과장 (연락처) 051)620-3023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주)BNK금융지주는 2015년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1. 일 시 : 2015년 5월 13일(수요일) 오전 10:30
2. 장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부산은행 본점23층 SKY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의결사항

(1) 제1호 의안 :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1. 주식의 포괄적교환의 목적 및 경위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목적 및 이유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BNK 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아 2014년 10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보유지분은 56.97% 입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자회사 편입 시점부터 지주회사 체제 아래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고객 편익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경남/울산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남은행은 부산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부산은행과 중복점포가 많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각자의 영업노하우 및 리스크관리 체계의 공유, 유사한 조직체계 운영 및 전산장비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행이 이러한 시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NK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비지배주주들간의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100%)를 소유한 완전모자회사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회사의 손익이 그 100% 모회사인 모회사의 손익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

으나, 자회사 주식 일부를 모회사 이외의 비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 비지배주주들의 존재로 인해 모자회사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룹내 분야별 전문금융회사간 연계영업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의 시너지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경남은행이 100% 완전자회사가 아닌 한 이해상충의 가능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약 등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이해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 및 시간의 비효율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경남은행의 비지배주주를 BNK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함으로써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BNK금융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룹의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룹 내 복수의 상장사를 유지하면서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측면도 일부 소모적인 부분이 존재한 바, 이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려된 사안입니다.

또한, 경남은행의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유상증자 시, BNK금융지주는 주주총회나 주주 전원 동의절차 등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방법을 통해 신속한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고, 경남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그룹 안전성 지표 개선에 따라 경남은행의 신용도 상향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의 상장사를 보유·유지함에 따른 주주총회, IR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은행과의 시너지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남은행의 경영활동의 유연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남은행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 그룹 일체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및 경남은행의 적기 자본확충을 통한 자본 적정성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5년 04월 01일
계약일		2015년 04월 01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5년 04월 16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5년 05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5년 05월 13일
	종료일	2015년 05월 26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주)BNK금융지주: 14,770원 (주)경남은행: 9,799원
<p><기타 중요 일정></p> <p>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p> <p>주식교환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p> <p>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예정일</p> <p>경남은행의 주권실효통지 및 공고예정일</p> <p>경남은행의 매매거래정지 예정일</p> <p>교환기일 등</p> <p>BNK금융지주 주식교환 등기 예정일</p> <p>신주권교부 예정일</p> <p>신주상장 및 경남은행 상장폐지 예정일</p> <p>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p>		<p>2015년 04월 01일</p> <p>2015년 04월 01일 ~ 05월 12일</p> <p>2015년 05월 04일</p> <p>2015년 05월 27일</p> <p>2015년 06월 02일</p> <p>2015년 06월 04일</p> <p>2015년 06월 09일</p> <p>2015년 06월 22일</p> <p>2015년 06월 23일</p> <p>2015년 06월 25일</p>

2.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요내용

가.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상호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대표이사	성 세 환
	법인가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상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대표이사	손 교 덕
	법인가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나. 주식수의 변경 및 1주당 금액

- BNK금융지주의 1주의 액면금액: 1주당 5,000원
- BNK금융지주의 발행주식수는 주식교환을 통해 21,555,347주가 발행되어 255,935,246주로 변경됩니다.

다. 주식교환비율 등

(1) 주식교환 비율

- 은행의 보통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의 보통주식 0.6388022주

(2) 산출 근거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BNK금융지주

구분	기간	금액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14,804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14,820
최근일 종가(C)	2015년 03월 31일	15,200
주식교환가액{D=(A+B+C)/3}	-	14,941

주1)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04월 01일)의 전일(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①+②+③) \div 3]$ 으로 산출합니다.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3-02	14,600	626,001	9,139,614,600
2015-03-03	14,750	449,017	6,623,000,750
2015-03-04	14,750	276,591	4,079,717,250
2015-03-05	14,650	307,762	4,508,713,300
2015-03-06	14,350	438,692	6,295,230,200
2015-03-09	14,650	413,338	6,055,401,700
2015-03-10	14,450	450,297	6,506,791,650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증가×거래량
2015-03-11	14,250	641,279	9,138,225,750
2015-03-12	14,350	982,578	14,099,994,300
2015-03-13	14,400	441,901	6,363,374,400
2015-03-16	14,500	296,821	4,303,904,500
2015-03-17	15,050	490,919	7,388,330,950
2015-03-18	15,300	635,260	9,719,478,000
2015-03-19	15,400	557,458	8,584,853,200
2015-03-20	15,250	662,617	10,104,909,250
2015-03-23	15,500	456,450	7,074,975,000
2015-03-24	15,200	678,387	10,311,482,400
2015-03-25	14,650	1,043,391	15,285,678,150
2015-03-26	15,250	705,476	10,758,509,000
2015-03-27	14,700	960,413	14,118,071,100
2015-03-30	14,550	757,300	11,018,715,000
2015-03-31	15,200	505,034	7,676,516,800
1개월 가중평균증가(원)			14,804
1주일 가중평균증가(원)			14,820
최근일 증가(원)			15,200

(나)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주)경남은행

구분	기간	금액(원)
최근 1개월 가중평균증가(A)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9,876
최근 1주일 가중평균증가(B)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9,388
최근일 증가(C)	2015년 03월 31일	9,370
주식교환가액{D=(A+B+C)/3}	-	9,545

주1)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04월 01일)의 전일(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③ 최근일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①+②+③) \div 3]$ 으로 산출합니다.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5년 0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증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3-02	10,400	137,363	1,428,575,200
2015-03-03	10,400	310,872	3,233,068,800
2015-03-04	10,300	220,152	2,267,565,600
2015-03-05	10,350	208,223	2,155,108,050
2015-03-06	10,250	396,702	4,066,195,500
2015-03-09	10,250	234,665	2,405,316,250
2015-03-10	10,200	322,942	3,294,008,400
2015-03-11	10,000	420,340	4,203,400,000
2015-03-12	10,150	287,148	2,914,552,200
2015-03-13	9,990	438,615	4,381,763,850
2015-03-16	9,930	204,622	2,031,896,460
2015-03-17	9,900	382,388	3,785,641,200
2015-03-18	9,870	264,454	2,610,160,980
2015-03-19	9,700	405,984	3,938,044,800
2015-03-20	9,500	464,160	4,409,520,000
2015-03-23	9,510	311,897	2,966,140,470
2015-03-24	9,510	155,682	1,480,535,820
2015-03-25	9,440	375,656	3,546,192,640
2015-03-26	9,420	202,986	1,912,128,120
2015-03-27	9,360	195,968	1,834,260,480
2015-03-30	9,290	182,450	1,694,960,500
2015-03-31	9,370	169,528	1,588,477,360
1개월 가중평균증가(원)			9,876
1주일 가중평균증가(원)			9,388
최근일 증가(원)			9,370

※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 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단주의 처리

- BNK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BNK금융지주의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BNK금융지주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함.

-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라.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1) 자본금 :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금의 총액은 BNK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주식액면 금액인 5,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자본준비금 :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준비금은 주식교환에 따라 새로이 발행되는 BNK금융지주의 신주 발행가액 총액에서 상기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함.

마. 주식교환의 승인

-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각각 2015년 5월 1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을 각각 승인함. 다만, 추후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효력발생 등 절차에 따른 주식교환절차의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바. 주식교환일 : 2015년 6월 4일(다만, 주식교환의 일정을 조정해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

사.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BNK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BNK금융지주가 제안한 주식매

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2,000억원을 초과하거나, BNK 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

(나)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경남은행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경남은행이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경남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본 주식교환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다)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아. 기타

(1) BNK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주식을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BNK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 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360조의13은 본 주식교환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본 주식교환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각종 세금은 그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각 당사자가 각각 부담한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

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범위 내에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들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당사회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 주식매수예정가격

(1) BNK금융지주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4,770원
산출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p>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	--

주 1)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2015년 3월 31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4,686원	2015년 02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4,804원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4,820원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14,770원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5년 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2-02	13,950	370,699	5,171,251,050
2015-02-03	14,450	862,034	12,456,391,300
2015-02-04	14,550	615,734	8,958,929,700
2015-02-05	13,850	1,489,361	20,627,649,850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증가×거래량
2015-02-06	13,900	616,975	8,575,952,500
2015-02-09	13,750	340,433	4,680,953,750
2015-02-10	13,850	473,788	6,561,963,800
2015-02-11	14,700	1,213,537	17,838,993,900
2015-02-12	14,450	1,073,836	15,516,930,200
2015-02-13	14,900	685,954	10,220,714,600
2015-02-16	14,700	369,038	5,424,858,600
2015-02-17	15,300	926,101	14,169,345,300
2015-02-23	15,200	575,833	8,752,661,600
2015-02-24	15,250	586,296	8,941,014,000
2015-02-25	15,000	359,112	5,386,680,000
2015-02-26	15,000	510,934	7,664,010,000
2015-02-27	14,900	487,998	7,271,170,200
2015-03-02	14,600	626,001	9,139,614,600
2015-03-03	14,750	449,017	6,623,000,750
2015-03-04	14,750	276,591	4,079,717,250
2015-03-05	14,650	307,762	4,508,713,300
2015-03-06	14,350	438,692	6,295,230,200
2015-03-09	14,650	413,338	6,055,401,700
2015-03-10	14,450	450,297	6,506,791,650
2015-03-11	14,250	641,279	9,138,225,750
2015-03-12	14,350	982,578	14,099,994,300
2015-03-13	14,400	441,901	6,363,374,400
2015-03-16	14,500	296,821	4,303,904,500
2015-03-17	15,050	490,919	7,388,330,950
2015-03-18	15,300	635,260	9,719,478,000
2015-03-19	15,400	557,458	8,584,853,200
2015-03-20	15,250	662,617	10,104,909,250
2015-03-23	15,500	456,450	7,074,975,000
2015-03-24	15,200	678,387	10,311,482,400
2015-03-25	14,650	1,043,391	15,285,678,150
2015-03-26	15,250	705,476	10,758,509,000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증가×거래량
2015-03-27	14,700	960,413	14,118,071,100
2015-03-30	14,550	757,300	11,018,715,000
2015-03-31	15,200	505,034	7,676,516,800
2개월 가중평균증가(원)			14,686
1개월 가중평균증가(원)			14,804
1주일 가중평균증가(원)			14,820

(2) 경남은행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9,799원
산출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1)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2015년 3월 31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0,134원	2015년 02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9,876원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31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9,388원	2015년 03월 25일 ~ 2015년 03월 31일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9,799원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5년 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2-02	10,850	150,719	1,635,301,150
2015-02-03	10,900	156,064	1,701,097,600
2015-02-04	10,800	200,270	2,162,916,000
2015-02-05	10,800	235,431	2,542,654,800
2015-02-06	10,900	166,345	1,813,160,500
2015-02-09	10,900	166,185	1,811,416,500
2015-02-10	11,050	197,925	2,187,071,250
2015-02-11	11,000	147,814	1,625,954,000
2015-02-12	10,850	137,578	1,492,721,300
2015-02-13	10,950	89,701	982,225,950
2015-02-16	11,050	64,443	712,095,150
2015-02-17	10,200	1,180,529	12,041,395,800
2015-02-23	10,400	382,667	3,979,736,800
2015-02-24	10,350	198,181	2,051,173,350
2015-02-25	10,500	119,758	1,257,459,000
2015-02-26	10,550	66,050	696,827,500
2015-02-27	10,500	60,839	638,809,500
2015-03-02	10,400	137,363	1,428,575,200
2015-03-03	10,400	310,872	3,233,068,800
2015-03-04	10,300	220,152	2,267,565,600
2015-03-05	10,350	208,223	2,155,108,050
2015-03-06	10,250	396,702	4,066,195,500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5-03-09	10,250	234,665	2,405,316,250
2015-03-10	10,200	322,942	3,294,008,400
2015-03-11	10,000	420,340	4,203,400,000
2015-03-12	10,150	287,148	2,914,552,200
2015-03-13	9,990	438,615	4,381,763,850
2015-03-16	9,930	204,622	2,031,896,460
2015-03-17	9,900	382,388	3,785,641,200
2015-03-18	9,870	264,454	2,610,160,980
2015-03-19	9,700	405,984	3,938,044,800
2015-03-20	9,500	464,160	4,409,520,000
2015-03-23	9,510	311,897	2,966,140,470
2015-03-24	9,510	155,682	1,480,535,820
2015-03-25	9,440	375,656	3,546,192,640
2015-03-26	9,420	202,986	1,912,128,120
2015-03-27	9,360	195,968	1,834,260,480
2015-03-30	9,290	182,450	1,694,960,500
2015-03-31	9,370	169,528	1,588,477,360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0,134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9,876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9,388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아래 '(1)'~'(3)'의 내용은 당사회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모두 해당 하는 내용입니다.)

(1) 행사절차 및 방법

(가)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5년 4월 16일(24시))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5년 5월 12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 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서면 반대의사 표시기간: 2015년 5월 12일까지

(3) 주식매수 청구기간: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위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4) 접수 장소

(BNK금융지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본점 21층 재무기획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

(경남은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 본점 14층 재무기획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

라.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1) BNK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BNK금융지주가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2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BNK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경남은행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경남은행이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경남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아래 '(1)~(4)'의 내용은 당사회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하고 필요 시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BNK금융지주 또는 경남은행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BNK금융지주 또는 경남은행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당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당사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사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BNK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위와 같이 배정 받은 BNK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주식처분은 BNK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BNK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주식교환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2015년4월9일자)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BNK